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0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출입국관리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법무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0. . .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출입국관리법 개정(2021. 1. 1, 2021. 1. 21. 시행)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서류인 ‘검사의 수사지휘서’를 ‘검사의 검토의견서’로 변경하는 한편,

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하고, 범칙금 납부대행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 서류인 검사의 ‘수사지휘서’를 ‘검토 의견서’로 변경(안 제5조의3)

2020. 2. 4.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‘검사의 수사지휘서’에서 ‘검사의 검토의견서’로 변경함.

나.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(안 제81조의2)

2020. 10. 20.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으로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때 2천만원 이하의 ‘이행보증금’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, 해당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예치

된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
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도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기한까지  
출국하지 않은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고,  
출국명령 시 붙인 조건(주거 제한 등)을 위반한 경우 이행보증금 일  
부를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함.

#### 다. 범칙금 납부대행의 세부사항을 마련(안 제105조의2)

2020. 10. 20.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으로 범칙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  
하는 경우 외(外)에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로 분할  
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
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 
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 하고, 납부대행수수료는 1천분의 15 이내로 함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제1항 중 “수사지휘서”를 “검사의 검토의견서”로 한다.

제81조의2 및 제10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(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) ① 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범법 사실, 동기
2. 범위반 전력, 나이, 환경, 자산
3.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
4. 그 밖에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법 제13조제2항”은 “법 제68조제3항”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,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국고 귀속 절차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5조의2(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)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

2. 법무부장관이 시설,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기관

②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, 해당 범칙금액(법무부령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)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3(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)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의3(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)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<u>수사지휘서</u>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 | 제5조의3(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검사의 검토의견</u><br><u>서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~ 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81조의2(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)</u> ① <u>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br><u>1. 범법 사실, 동기</u><br><u>2. 법위반 전력, 나이, 환경, 자산</u><br><u>3.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여부</u><br><u>4. 그 밖에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</u> |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법 제13조제2항”은 “법 제68조제3항”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,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국고 귀속 절차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인 출국하는 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5조의2(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)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

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  
된 금융결제원

2. 법무부장관이 시설, 업무수행  
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  
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  
로 지정·고시한 기관

②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른  
납부대행수수료는 법무부장관  
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 
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
승인하며, 해당 범칙금액(법무  
부령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  
함한다)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 
수 없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 | (02) 2110 - 4116 |